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19 선고 2019가단517119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17 선고 2021나17197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19 선고 2019가단5171191 판결

전 문

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

피 고 1. A

2.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홍준, 김민지

변 론 종 결 2020. 11. 13.

판 결 선 고 2021. 2. 19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43,786,319원 및 그 중 43,335,969원에 대하여 2019. 6. 10.부터 2019. 11. 20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2018. 6. 16.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3.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. 6. 19. 접수 제228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5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.
6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8. 6. 16.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. 6. 19. 접수 제228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8. 3. 9.경 피고 A과 사이에, 피고 A이 주식회사 C(이하 ‘C은행’이라 한다)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,25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. 위 약정에 의하면, 원고가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(2018. 2. 1.부터 연 10%이다)로 계산한

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, 그리고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.

나. 피고 A은 같은 날 위 약정을 이용하여 C은행으로부터 5,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, 2018. 12. 19.경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 이에 원고는 2019. 6. 10. 43,335,969원(= 보증금액 4,250만 원 + 위 대출약정에 의한 연 4.15%의 비율로 계산한 2019. 6. 9.까지의 이자 835,969원)을 대위변제하였고,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은 251,250원이며, 보증기간만료 후 대위변제 전날까지의 추가보증료는 199,100원이다.

다. 한편 피고 A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6. 19. 처인 피고 B에게 2018. 6. 16. 부담보증여(이하 ‘이 사건 증여’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억 5,000만 원 정도였고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D 주식회사(이하 ‘D’이라 한다)에 대한 92,883,112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이 사건 증여계약상 위 채무는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하였다. [증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, 8호증, 을나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원고에게 합계 43,786,319원(= 대위변제금 43,335,969원 + 추가보증료 199,100원 + 채권보전조치비용 251,250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3,335,96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. 6. 1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. 11. 20.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1)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,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

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(대법원 2007. 3. 16. 선고 2005다10760 판결 참조),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(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4다5822 판결 참조)에 비추어 볼 때,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,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.

2)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던 C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이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이는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3) 원고는,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구상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, 갑 제3, 7, 9, 1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E 주식회사, F 주식회사,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위와 같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1) 당사자의 주장 요지

원고는,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 B는, 피고 A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.

2) 판단

가)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

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들은 1996. 6. 28.

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는데, 2018. 6. 12.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실, 피고 A은 그 무렵인 2018. 6. 16. 피고들이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사실, 피고들은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8. 10. 10.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, 이후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, 피고 B는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나) 사해행위 성립 여부

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,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,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다73105 판결 참조).

이 사건의 경우, 을나 제2호증의 2, 3, 8, 제4호증의 1, 4, 5, 제6호증의 2, 제9호증의 1, 제11호증의 1, 2, 3, 제15호증의 3, 5, 제16호증의 1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들의 혼인기간, 피고들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각 기여한 정도, 이혼신고 당시의 피고들의 각 재산 현황 등을 보태어 보면, 피고 B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초과하여 그 전부를 이전받은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하고, 따라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

①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아래와 같은 채권(합계 105,079,781원)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, 소극재산으로는 C은행과 D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 외에도 C은행에 대한 5,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, E 주식회사에 대한 2,321,782원의 채무, F 주식회사에 대한 517,740원의 채무, G 주식회사에 대한 9,893,631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

있었다(D 대출금을 제외하면 합계 112,733,153원이다).

㉠ C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35,079,781원(= 33,879,469원 + 1,200,312원)㉡ 부천시 소사구 H 건물 일부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1,000만 원

㉢ 부천시 I빌딩 5층 일부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3,000만 원㉣ 부천시 원미구 J 건물 1층 일부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3,000만 원

② 이혼 당시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과 별도로 피고 A로부터 미성년 딸인 K(2003. 1.생)의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K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(약 39개월간)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(총 7,800만 원).

③ 이혼 후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종전에 보유하던 부동산(전남 구례군 L 외 3필지 중 각 1/3 지분) 등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,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D 대출금 외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.

④ 또한 피고 A은 자신이 임차한 위 ㉠항 기재 건물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'M'를 2018. 8. 8.경부터 피고 B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해주었다(따라서 위 ㉠항의 3,000만 원의 보증금도 그 무렵 피고 B에게 양도되었을 개연성이 있다).

⑤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 이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졌고, 별다른 책임재산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으며,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였다.

⑥ 피고 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합계 1,126,203,949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그 피담보채무의 부담 하에 양수한 것은 재산분할로서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555,079,781원(= 이 사건 부동산 4억 5,000만 원 + 채권 105,079,781원)에 불과하였다.1)

다.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 B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,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라. 소결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 B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현경

별지

목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건물 P동 [도로명주소] 인천 부평구 Q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경사지붕 20층 공동주택

지하1층 51.02㎡, 1층 430.56㎡, 2층 내지 4층 각 426.9㎡, 5층 내지 18층 각 420.94

㎡, 19층 내지 20층 각 210.47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인천 부평구 N 대 70926.2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7층 R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.07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 70926.2분의 52.3176

끝.

1) 피고 B의 2020. 8. 19.자 준비서면 1~2쪽 기재 표 중 순번 4번 기재 보증금 일부(1,000만 원)와 순번 5번 기재 보증금은 각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피고 A이 아니고, 순번 8번 기재 보증금은 이 사건 증여 후에 비로소 피고 A의 앞서 본 예금 중 일부로 지급이 완료되었으며, 순번 10번 기재 보증금은

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과 다른 사람의 동업재산에 해당한다. 또한 순번 11~16번 기재 각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피고 A이 변제를 받아 소멸하였거나,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채권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. 그리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피고 B 주장의 권리금 및 투자금 상당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